

#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. 13.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. 1. 13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0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1.18.)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이해양)

가. 제안이유

○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불용품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사항을 물품관리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준용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불용품에 대하여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 불용처리 하도록 하였으나, 활용가능품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조정함(안 제16조 제1항)

○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부천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함  
(안 제16조 제4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내용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시 창고에 있는 재활용 가능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,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데 재활용 자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?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정기적으로 불용품을 확정하여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</li>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불용품 소요조회를 자체인터넷 홈페이지로 명시하였는데 부천시 홈페이지로 수정해도 문제는 없는지?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네! 부천시홈페이지로 명확하게 함이 맞습니다.</li></ul>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- “자체인터넷홈페이지”를 “부천시 홈페이지”로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함.

#### 나. 반대토론

-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### 6. 수정안 요지

- 별첨

### 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#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제80호
의 결 년월일	2003. 1. 21 (제102회)

제 안 년 월 일 : 2003. 1. 18.

제 안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불용품 소요조회시 입력대상 홈페이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“자체 인터넷홈페이지”를 “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”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불용품 소요조회를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함.(안 제16조 제4항)

## **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**

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제16조 제4항중 “자체 인터넷 홈페이지”를 “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”로 한다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 와 불용결정) ① ~ ③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 와 불용결정) ① ~ ③(생략)</p> <p>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 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 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 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하 는 것으로 제③항에 의한 소 요 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</p>	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 와 불용결정) ① ~ ③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..... ..... 부천시 인 터넷 홈페이지..... .....</p>

#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80 호
의 결 년월일	2003. 1. 21 (제102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1. 13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## □ 개정이유

-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불용품 소요조회 및 불용 결정 사항을 물품관리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준용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불용물품에 대하여 현행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때 불용처리 하도록 하였으나, 활용가능품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조정함.(안 제16조 제1항)
- 나.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천시 홈페이지에 입력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함.(안 제16조 제4항)

## 【수정안 포함】

# 부천시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

부천시 물품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6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물품 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 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, 활용 가능 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 품의 소요 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 3항에 의한 소요 조회를 갈음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.	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,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
1. ~ 8.(생략)	1. ~ 8.(현행과 같음)
② 및 ③(생략)	② 및 ③(현행과 같음)
〈신설〉	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.